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922호 2015년 2월 24일(화)

조 례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390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4조제2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후단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4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및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로 한다.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의의 운영을 준용한다.

제30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9호 중 “건축할 수 있는”을 각각 “건축할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제31조제11호 중 “10톤”을 “16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32조제11호 중 “10톤”을 “16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33조제8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34조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중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5층 이하”를 “5층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46조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제50조제19호 중 “40퍼센트 이하”를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제55조제2항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0조의2,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위원명단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성명은 가운데 자는 빼고 공개한다)

제62조의2(서면심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개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하기”를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장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제70조부터 제73조) 및 제7장 보칙(제74조부터 제76조)를 각각 제6장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제71조부터 제74조 및 제7장 보칙(제75조부터 제77조)로 하고, 제6장제2절(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공동위원회

제7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30조제3항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2조 내지 제64조,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13호 나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14호 본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2의 17호 본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2호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제14호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3호 가목부터 바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
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
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5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가.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은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개 정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의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